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내 예술강사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Arts Instructor in the Culture & Arts Education Delivery System

김현종[1], 조남규[2]

Hyun-Jong Kim[1], Nam Gyu Cho[2]*

요 약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는 구조적인 측면과 인적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 측면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는 수직적 구조로서 기관과의 의사소통 장애, 전문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는 중앙에서 공적자금을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재단(약칭 '지역센터')이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집행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인 예술강사를 선발하여 각 학교, 문화시설, 복지기관 등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술강사는 수혜자(학생, 지역주민, 소외계층 등)와 최단거리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들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관주도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되어 예술강사에 대한 역할과 지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내의 예술강사의 개념과 역할을 문화매개자로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핵심어: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문화매개자, 예술강사, 문화예술전문 인력

Abstract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delivery system is composed of structural aspect and human aspect. These two aspects are interconnected, and this delivery system in a kind of vertical structure has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such as communication difficulties with institution, and lack of professionalism. Under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education delivery system,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nd the Regional Culture Foundation (referred to as 'regional center') play a role as an executive organ with public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executive organ selects arts instructors who are

1 Dept. of Perfo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03016, korea
e-mail: aircon88@naver.com.
2 Dept. of Perfo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03016, korea
e-mail: cng1222@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pril 20.2017), Review (June 09.2017), Accepted(June 30.2017)

ⓒ 2017 NCISS

the intermediarie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dispatches them to schools, cultural facilities and welfare institutions. These arts instructors carry out culture and arts education at places in the shortest distance from beneficiaries(students, local residents, alienated groups, etc.), and these arts instructors account for 80%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jects.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part of the job creation project, and the role and status of the arts instructors have not been properly evaluated so far.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y to redefine the concept and role of arts instructor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delivery system as a culture intermediary.

Key words: culture and arts education, delivery system, culture intermediary, artistic lecturer, culture and arts professionals

1. 서론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가치관을 열어주고 예술을 경험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공감의 문화예술', '아픈 사회의 치유(힐링)'를 첫 번째로 전망하였으며 ' 공동체와 예술, '함께 길을 찾는 것'을 두 번째 중요하게 예측하고 있다[1]. 2003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지역사회문화 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상정하였다. 이후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파급과 공교육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부처 간 유기적 소통 채널이 없어 전달체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2].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관주도로 시행되었고 고용정책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되어, 문화예술교육 방향과 정책 전달체계가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와 사회로 나뉘어져 있어 전달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3].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예술교육은 선택이나 선호에 따라 동아리 방과 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내 예술교육을 담당은 교사가 아닌 예술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기관, 장애인시설 등에 예술강사 파견하고 있으며, 일반시민 대상은 공공박물관.미술관과 지역문화시설 등에 예술강사가 파견하고 있다. 예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예술강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체 학교내외에 단기간기간제근로자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주체와 전달체계내의 예술강사에 대한 역할과 개념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 2017 NCISS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념과 구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정책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이보다 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더욱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예술교육은 전통적으로 음악, 미술 등 장르별 실기교육을 지칭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전통적인 예술교육 개념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어 오던 문화교육 개념을 통합한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4]. 국가적 차원에서 시발점이 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1998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 학교 전통문화 소외현상 제기되면서 학교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 국악인이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도하는 국악강사 풀제 사업으로 2000년 시작되었다. 2006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함께 예술강사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어 현재 국악, 무용,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영화, 디자인, 사진 등 8개 예술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지원방식인 정부지출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재원으로 나누어 지원되는 방식이다. 그 속에서 중앙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조직과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시도교육청이 존재하며,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현한 지역문화재단이나 민간기관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로 지정받아 수행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이러한 전달체계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부에서는 각 지방교육청을 통해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5])이나 민간기관 문화예술교육 전달 매개자인 예술강사를 선발.배치.파견.평가하고 있다. 선발된 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단체 등이 용역계약 체결하여 그 지역의 학교와 복지기관 등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다. 결국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전달체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전달체계는 통상적으로 여러 조직과 주체별로 구성되고, 이들 간의 상하체계 또는 각 주체 간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진다.

ISSN: 2384—101X JNCIST
ⓒ 2017 NCISS

2.2 예술강사의 개념과 역할

우리나라에서의 예술강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보조사업인 예술강사지원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국악강사풀제에서 2006년 명칭이 변경되어 예술강사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예술강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예술가로서의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하는 예술교육가의 명칭과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예술교육가라는 용어는 프랑스는 참여예술가,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티스트 에듀케이터(artist-educator), 상주형 예술가(artist inresidency), 예술컨설턴트(arts consultant), 방문예술가(visiting artist), 배우교사(actor teacher) 또는 단순히 예술가(artist)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김애영(2010)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교육자를 세분류로 나뉘었는데 예능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학교 내의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을 하며, 예술가와 예능교사가 하는 예술교육은 예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전달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 예술강사들은 예술가이자 예술교육을 하는 교육가로서 이들이 교육하는 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하였다[6].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전문인력으로 'TA(Teaching Artis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TA(teaching Artist)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 LCI(Lincoln Center Institute), 즉 링컨센터 예술교육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예술교육자를 지칭하면서 가장 널리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로 서울문화재단 'TA(Teaching Artist)로 명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예술강사'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7].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공인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arts & culture educator)는 학교와 사회시설에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예술강사'와 기관단체의 '기획관리실무자'를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다. 우리나라 예술강사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두 개의 사업 영역에서 문화실천가, 교육기획자, 교육매개자, 교육평가자 등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8].

ⓒ 2017 NCISS

[표 1] 예술강사의 역할 및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Arts Instructors and Their Role

역할	정의
1. 문화실천가	자신과 관련된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가로서 혹은 예술전문가로서 창작, 향유, 소통에 직접 참여하고 실행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실현에 이바지 하는 사람
2. 교육기획자	학습자 지향적 태도로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수활동을 조직하는 사람
3. 교육매개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학습자들의 예술적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정서적, 신체적 발달 도모 및 긍정적인 자아상과 올바른 사회성을 확립하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
4. 교육평가자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는 사람

(출처: 2009, 이창준 외, P 57.)

2.3 문화매개자의 개념과 역할

'문화매개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자신의 저서인 「구별짓기」(1979)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소비되는 과정 내에서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문화생산물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여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면서 소비자들이 특정 문화생산물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르디외는 문화매개자 외에 '새로운 문화매개자(Nouveaux Intermediaires Culturels)'라는 용어를 썼는데, 문화매개자가 전체 사회공간에서 계급구성 맥락에서 나온 용어라면 새로운 문화매개자는 문화생산 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면서 문화산물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자와 기구를 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문화매개자는 프랑스 문화부의 문화개념사전[9]에 의하면 '문화는 일반적으로 코드화되어 표현되기에 일반시민들 모두에게 즉각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워 중간 '매개자'에 의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역할을 통해 문화매개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광준(2005)은 '매개자는 어떤 활동을 촉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생활, 환경, 시스템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활성화 시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소재의 진원지에 따라 총 6가지 매개자를 나누었고, 다시 층위에 따라 4가지로 문화예술

교육 매개자를 구분하였다[10].

[표 1]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유형
[Table 1] Types of Culture & Arts Education Intermediary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소재 진원지에 따라	층위에 따라
① 교육현장 매개자	① 실천이론 매개자
② 예술기반문화예술교육 매개자	② 행정 매개자
③ 공공문화기반시설 매개자	③ 교육기획 매개자
④ 시민문화예술교육 매개자	④ 창조적 문화예술교육 강사
⑤ 소수자문화예술교육 매개자	
⑥ 지역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출처: 2005, 이광준)

3.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내 예술강사 역할 재정립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는 관계부처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현장의 인력과 예산, 조직, 시설 등 문화, 행정, 교육 참여자들의 소통과 관계성 과정에서의 매개자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이광준(2005)이 말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소재의 진원지에 따라 6가지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유형화한 것을 가지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와 접목하였다.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유형과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육현장매개자를 학교예술강사 사업과 예술꽃씨앗학교에 참여한 예술강사로 교과과정내와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고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한다. 두번째, 예술기반문화예술교육 매개자는 국공립기관 연계, 박물관.미술관연계, 도서관연계 등 문화시설.단체와 주말에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꿈다락 토요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한 예술강사이다. 세 번째는 공공 문화기반 시설 매개자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담당자, 코디네이터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향유자와 수용자 필요에 기반 하는 문화매개자를 말한다. 네 번째, 시민문화예술교육 매개자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파출소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같이 도서산간지역의 주민을 위해 이색적으로 꾸며진 예술버스 안에서 예술

ⓒ 2017 NCISS

강사들과 예술 활동을 한다. 다섯 번째, 소수자 문화예술교육매개자로 장애인.노인.아동복지기관, 소외·위험 청소년, 탈북자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를 담당하는 예술 강사이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예술교육 매개자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 강사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풀뿌리예술가, 지역문화기획자 등 이다. 한편 매개자 층위에 따라 실천이론매개자, 행정매개자, 교육기획매개자, 창조적 문화예술교육강사가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내의 예술 강사가 그 역할을 소화해 내고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예술 강사는 총괄기획자로 관련단체와 기획방향을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형성을 통해 현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는 수직적인 반면 문화매개자로서의 예술 강사는 수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수직적 성격을 띠는 것은 구조적 측면이고, 수평적 성격을 띠는 것은 인적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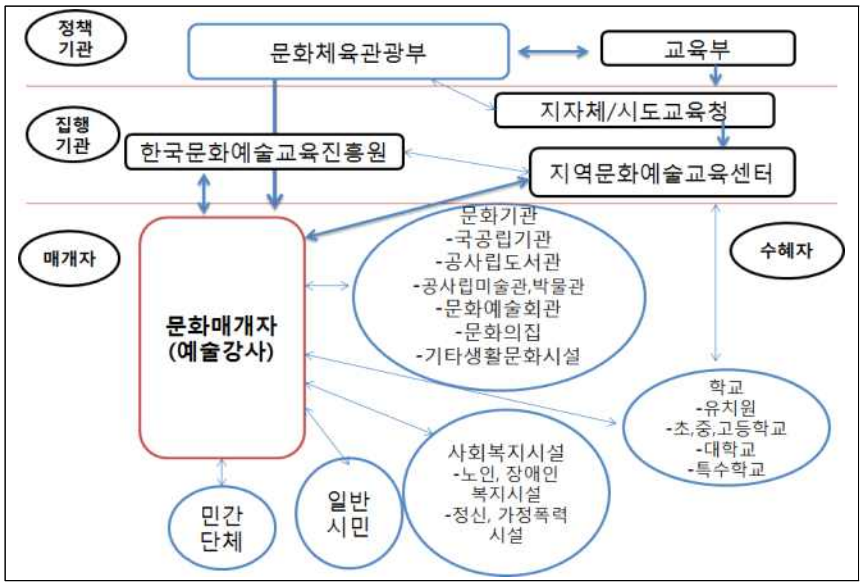

[그림1]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Fig. 1] Delivery System of Culture & Arts Education

전달체계내의 인적측면을 가지고 있는 예술 강사는 개인, 팀, 그룹 등의 형태로 집단화(Grouping) 또는 문화시설별로 유형화하여야 한다. 예술분야별로 개인이나 팀과 그룹으로 집단화(Grouping)한 예술 강사와 문화시설별로 유형화된 예술 강사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 2017 NCISS

구축된 예술 강사 플랫폼이 문화매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성격별, 형태별, 자원별로 나뉘어 기획자로, 행정가로, 실천이론가로, 창조적 교육 강사의 역할로 학교와 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예술 강사 플랫폼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분석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다. 지역의 문화시설별.예술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내의 문화매개자로서의 예술 강사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한다.

4. 결론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6)의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2014)에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명확한 개념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각 분야별 예술 전문 인력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우리나라의 예술 강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술 강사의 역할을 논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문화매개자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 강사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그 구축된 예술 강사가 중심이 되어 성격별, 형태별, 자원별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술 강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내의 역할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2017 NCISS

References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Analysis and Prospect of 2013 Trends of Culture and Arts'

[2] W. h. Jang, An Analysis of Delivery System for Policy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ed on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nd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1), pp.37 ~ 43

[3] According to Article 2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School-drive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Society-driven one are separately defined.

[4] Culture and Arts Education White Pap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06)

[5] According to Paragraph 6 of Article 10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Act,'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designate 'Regional Center' through the agreement with local government

[6] A. Y. Kim,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rts Teac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10).

[7] K. H. Nam, 'The Direction of Culture & Arts Education History, based on reviewing examples of art instructors in other countries. Korea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KAAE), (2013), pp.59-94.

[8] C. J. Lee, S. Y. Kang, and S. Y.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based Arts Instructors Training Cours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09), p.56-57

[9] http://www.culture.gouv.fr/culture/politique-culturelle/ville/mediation-culturelle/mn.pdf, Retrieved: APRIL 18 (2017)

[10] K. J. Lee, 'Definition and Role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Intermediary' (2005), Intermediate Presentation Workshop for Best Practice Model Development Research Project <Inside & Outsid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reviewed at the boundary> (2005), Seoul. Korea

ⓒ 2017 NCISS